

한국 한시에서의 여성적 욕망의 발현과 懲治*

이택동**

<차 례>

1. 들어가며
2. 성적 욕망의 정돈과 流露
3. 顯現된 욕망, 엄혹한 懲治
4. 여성 욕망 장치의 인식론적 기저
5. 마치며

<국문초록>

『禮記』, 『內則』에 “빙하면 처가 되고 분하면 첩이 된다(聘則爲妻, 奔則爲妾)”는 언명이 있으며 『周禮』, 『地官司徒』에는 “중춘의 계절에 남녀를 만나게 하였는데 이때에는 분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았다(仲春之月, 令會男女, 於是時也, 奔者不禁)”라는 언명이 등장한다. 경전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언명은 각기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음탕한 행동을 하면 첩이 된다. 음탕한 행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앞의 문장이 여성들에게 정절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뒷 문장은 여성의 성적 일탈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앞의 문장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있다면 뒤의 문장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문장은 중세적 규범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뒤의 문장은 중세적 규범에서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해당 구절에 대한 전통 사회의 주석가들은 거개의 경우 위의 문장을 저와 같이 해석하지 않았다. 혼례날이 정해졌는데 황제가 불러 벼슬을 하게 되면 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혼례일이 정해졌는데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첩이 된다고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흉년이 들면 첩이 된다는 해석도 있었다.

* 본 연구는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건강부회라 아니할 수 없겠는데, 짐작되듯 위의 해석들은 모두 오역이다. 그렇다면 유학자들은 여하한 이유로 저러한 오역을 감행하였을까. 여성들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 사회의 유학자들이 도덕적으로 교조적인 사회를 회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여야만 하였을 것이다. 성적 욕망을 분출한 예외적인 여성들은 도덕적 매도를 피할 수 없었으니 저러한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 할 수는 없겠다. 여성의 성적인 욕망을 묵인하는 유학자들도 없지 않았지만 예외적인 소수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성의 성적 욕망과 관련된 경우로 국한하자면, 동아시아의 중세 사회는 암울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성적 욕망, 懲治, 인식론적 기저, ‘奔’, 교조적 사유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한국 고전문학에서의 聖과 俗”이란 기획 주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자에게는 聖은 당위로, 俗은 존재 그 자체로 치환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한국 한시에서의 志向과 止揚』이란 논제를 학회 측에 제출하였다.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향과 지양’의 내포와 외연이 깊고도 넓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여성의 성적 욕망의 流露에 대한 당대의 규범이나 당위적 인식은 여하히 대응하고 있었는지로 초점화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즉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당대의 규범이나 당위가 가지는 의미나 適否에 논의의 강음부호가 놓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예비적으로 2장에서는 여성 작가에 의해 쓰인, 성적 욕망이 유포된 경우와 정돈된 사례를 살핀다. 바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사

정이 달라진 듯도 하지만, 여성의 성적 욕망은 오랜 세월 봉인된 채 緘口를 강요받아 왔다. 그러한 완강한 봉인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이거나 이에 대한 작품화가 아예 없지는 않았으니 우선 그 양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역시 예비적으로 3장에서는 한시 작품에서 여성적 욕망이 형상화된 경우 어떠한 징치가 가해지는지를 살핀다. 특정한 체제가 마련한 규범에 대한 뒤흔들은 어느 경우나 있게 마련이다. 체제는 뒤흔들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의 기제를 마련해 둔다. 여성의 성적 욕망이 주된 관심사인 이 발표에서는 그에 대한 懲治가 적절하지 혹은 과도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동아시아 중세의 경직성에 기인하겠지만, 여성의 성적 욕망의 발현이 여성 작가에 의해 작품으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희소하기 그지 없다. 사정이 그렇기에 논의의 대상은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로 성적 욕망을 형상화한 남성 작가의 작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조를 노출하는 작품은 남성 작가의 작품임에도 엄중한 징치가 가해지는 바, 이를 통해서도 동아시아 중세의 경직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뒤이어 본격적으로 이러한 징치를 가능케 한 인식론적 기제를 살피려는 바, 이러한 작업은 동아시아 중세를 관통한 도덕적 교조주의가 작동하는 한 기제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습이나 규범 혹은 도덕률 등등의 개개인을 규율하는 기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공동체를 지탱하는 이념의 확대나 변용인 경우가 태반인 것이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념의 젖줄은 經書와 그에 대한 주석의 축적이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해, 경전과 그에 대한 후대의 주석은 어떤 시각을 노정하는지 살피며 그 의미나 의의에 대해 고구하려는 것이다.

2. 성적 욕망의 정돈과 流露

오늘날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전통 사회에서는 내적이며 외적인 금기와 검열 기제가 전방위적으로 작동되었다. 이에 전통 사회를 살아간 개인은 미리 주어진 규범이나 도덕률을 내면화하며 자발적인 順治를 선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제아무리 페놉티콘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훑어본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다. 상정된 금기를 위반할 경우 지불해야 할 危害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도 욕망한 일은 현실화하려고 욕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전통 사회를 살아간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살아갔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리 내면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외적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존하든지 막론하고, 그에 대응되는 언표를 가진다는 점을 상기하려 한다. 도입부가 지리한테 의도는 단순하다. 전통 사회를 살아가며 촘촘한 금기 속에 갇혀 살아간 개개인들도 그네들의 욕망을 언어로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문학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통 사회를 살아간 개인들이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도덕률에 반응하는 양태의 편차를 살펴보려 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여성의 욕망이 문제시되는 작품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제시된 시구는 李恪夫人과 난설헌 허씨, 무명씨의 작품이다. 인간은 자동동체가 아니니 이성에 대한 이끌림이 없을 수 없겠다. 이 대목에서는 성적 욕망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해야 보다 적실한 표현이겠다. 그러한 욕망을 아래 세 시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억제하고 어떤 식으로 발산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억제와 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어느때쯤 전장에서 푸른 깃발 세우고 있는가,
 오랑캐들 노래소리 피리소리 꿈속에서도 구슬프다.
 거리끝 버들을 내 어찌 안타까워 하리오,
 돌아오실 말안장 달빛 비치는 가지에 뭇 때만을 기다리리.

(何處沙場駐翠旗，戎歌羌笛夢中悲。陌頭楊柳吾何怨，只待歸鞍繫月枝。)¹⁾

지은이는 世宗 治世時 북방 오랑캐를 정벌한 李恪의 부인이다. 기실 봄의 生生力을 상징하는 전형이 바로 물오른 버들개지다. 물오른 버들개지는 온갖 식물들의 그리고 갖가지 곤충들의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육체적인 교섭을 표상한다. 그러한 표상성을 가진 봄철의 버들을 목도하며, 지아비의 부재에 말미암은 안타까움이 피어나지 않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작품에서 이각의 부인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단호히 정돈하며 지아비의 무사귀환만을 희구하고 있다.

제비는 발을 스쳐 쌍쌍이 날고, 꽃은 어지러이 비단옷에 떨어지네.
 침방에서 눈닿는 건 온통 春意를 애답게 하는데, 풀 푸른 강남에서 님은 돌아오지 않네.

(燕掠斜簾兩兩飛，落花撩亂撲羅衣。洞房極目傷春意，草綠江南人未歸。)²⁾

난설헌 허씨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다. 제비는 홀로 지내 허허로운 자신에게 과시라도 하듯 쌍쌍이 드나들고 훑날리는

1) 李恪夫人, <送夫出塞>(김달진 역해, 『한국한시』 3권, 민음사, 1989, 17쪽.)

2) 난설헌 허씨, <寄夫>(이종은, 정민 공편, 『한국역대시화유편』, 아세아문화사, 1988, 344쪽.)

꽃송이는 자신에게 내려앉고 있다. 이 대목에서의 ‘撲羅衣’는 홀로 외로운 시인을 도발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제비와 꽃송이만을 내세웠지만, 규방에 앉은 시인의 눈길이 닿는 모든 것이 싱그럽게 무르익어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春意를 애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님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어받은 구절을 통해 유추하자면, 情人의 부재로 봄철 생생력의 축제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의 괴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³⁾

뜻이 있어 두 가슴 합했고, 정이 많아 양다리 벌린다.

동요는 나에게 달렸으며, 심천은 그대에게 맡겨둔다.

(有意雙胸合, 多情兩股開. 動搖於我在, 深淺任君裁.)⁴⁾

읽으며 확인되듯, 부연하기 민망할 정도로 성애의 현장을 증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셋을 포개어 살펴보면 이각부인의 작품은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피어나는 情念을 정돈하며 남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다. 난설헌 허씨의 작품은 여성의 욕욕을 뼈죽이 내비치고 있는 정조와 함께 시인의 사후 문집 간행 과정에서 세간의 논란을 우려해 수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한다면, 純正한 정조로 읽기는 어렵겠다. 무명씨의 작품은 다른 무엇보다 싹고 있는 『지봉유설』에서 ‘婦人의 시편으로 시어는 교묘하나 지나치게 외설적이라고(語巧而太褻)’ 논평하고 있으니 욕욕을 있는 그대로 발현해 내고 있다.

결국 세 작품은 각각 전장에 나간 지아비의 안위에 대해서만 노심초사

3) 지금 읽는 두 작품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검토한 바 있음을 註를 통해 밝혀둔다.(줄고, 『조선조 여성 漢詩의 두 樣相』, 『성심어문논집』 제 20·21合併輯, 1999, 115~117쪽 참조)

4) 무명씨, <剪刀>(이종은, 정민 공편, 『한국역대시화유편』, 아세아문화사, 345쪽. 南畝星 譯, 『芝峯類說(下)』, 을유문화사, 1998, 181쪽.)

하는 지어미, 남편의 빈자리를 헛헛해하는 지어미, 정사의 悅樂을 直敍하는 부녀자의 내심을 그려내고 있는 시편이라 하겠다. 이각 부인의 작품에서는 여성적 욕망 정돈하기의, 무명씨의 작품에서는 여성적 욕망 드러내기의 極點을 읽어본 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욕망의 드러내기와 정돈하기를 두고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인가. 이각의 부인은 정려문을 하사받고, 난설헌 허씨는 준엄한 罵倒가 가해지며, 무명씨에게는 주홍낙인이 찍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태의 전개일 것이다. 지배적이며 그리하여 보편적인 읽기는 저와 같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각 부인에서 윤리나 도덕률 혹은 금기에 포획된 창백한 우울을, 무명씨에서 그것을 벗어던진 혹은 그것에서 비껴난 활발활한 생동을 읽고 있는 사람도 아예 없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아예 무명씨의 작품은 동시대에 유통되지도 오늘날까지 유전되지도 않았을 터이니 말이다. 결국 이 장의 논의를 통해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상정 가능한 최대치의 욕망 드러내기도 시도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진솔함을 지지하는 흐름도 없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 인용한 소로우의 언명에 기대어 이 장의 논의를 가름하기로 한다.

나는 나 자신 속에 보다 높은, 소위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과 원시적이고 상스럽고 야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본능을 발견하고 있다. 나는 이 두가지를 다 존중한다.⁵⁾

내열하는 성적 욕망을 정돈하는 것은 보다 높은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과 동궐에 놓일 것이다. 한편 성애의 현장을 생중계하는 것은 원시적이고 상스럽고 야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5) 헨리 데이빗 소로우(강승영 옮김), 『월든』, 이레, 2004, 302쪽.

그런데 소로우는 이 양자를 아울러 존중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⁶⁾ 과연 그렇다. 정신과 육체는, 문명과 야만은 우월과 열등으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나누어가지는 상보적인 타자일 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제는 순연히 이론적인 층위에서만 참일 수 있으며 사람들이 모여 일구어낸 사회 속에서는 큰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현실 공간은 결코 맹목이나 편견 그리고 迷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맹목과 편견의, 농도는 열어지게 밀도는 느슨해지게 노력하는 정도가 아닐지.

이 자리의 논의로 돌아오면, 이를테면 이각 부인의 작품은 거개의 경우 고귀하며 우아한 그러므로 지향의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와 달리 무명씨의 작품은 저열하며 비속한 그러므로 지향의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전자에서 창백한 우울을, 후자에서 활발발한 생기를 읽은 이들은 역시 나름대로 전자를 貶毀하고 후자를 高評하는 독법을 제출할 것이다. 그런데 소로우는 정신적인 삶도 상스러운 삶도 존중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 또한 소로우의 통찰을 존중한다면, 무명씨와 이각 부인의 작품을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의 발현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미망과 맹목에 간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론 至難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 말이다.

3. 顯現된 욕망, 엄혹한 懲治

앞 장에서 살핀 바, 여성적 정한의 발현은 그 스펙트럼이 자못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여성적 정한을 당대적 규범으로 정돈하는

6) 이러한 통찰이 소로우만의 것이겠는가. 바흐친도 상수도 문화와 하수도 문화를 위계 짓지 않았다.

작품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었을 것이며 여성적 정한을 진솔하게 토로하며 안타까움을 착색한 작품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욕구를 검열 기제의 여과 없이 直敍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희귀한 사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펼쳐진 스펙트럼에서, 전통사회가 마련한 규범이나 도덕률에서 벗어나 보이는 작품들은 어떻게 취급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성적 정조를 드러내는 남성 작가들의 작품인 바, 왕소군을 소재로 다룬 작품에 집중하여 그 양태를 검토한다.

틸끝만큼이라도 한나라에 이롭다면, 만 번 죽음을 첩이 어찌 사양하리오
다만 옛날 궁궐에 같이 있던 궁녀들, 나를 알찌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구나.
(一毫利於漢, 萬死妾何辭. 却羞舊宮伴, 呼我作閼氏.)⁷⁾

몇 번이나 주렴 견고 옥계단을 보았으랴, 화사에게 황금 뇌물 아니 준 걸
한탄 마소.

변방 성에 뜬 달 비록 아니 봤다 하더라도, 깊은 궁서 맑은 밤에 슬픔 안고
있었으리.

(幾捲珠簾望玉墀, 黃金休恨洛陽師. 縱然不向邊城月, 猶抱深宮清夜
悲.)⁸⁾

앞 작품은 조선 후기를 살아간 이양연이 노래한 <왕소군>이다. 떠나온 왕조에 대한 견결한 丹心이 확인되며, 함께 짝했던 궁녀들이 나를 흉노의

7) 이양연, <王昭君>(鄭後洙, 『臨淵 李亮淵의 漢詩 抄』, 『동양고전연구』 제7집, 동양고전학회, 1996, 339쪽). 입연 이양연의 한시는, 해당 글에서 이루어진 정후수 선생의 번역을 통해 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선학의 성취를 기리기 위해 정후수 선생의 번역에 의지하며 논지를 전개한다.

8) 정두경, <明妃怨>其三, 『東溟先生集卷之二』(한국문집총간 100권 400쪽).

계집되었다 손가락질 하고 있을 사정만은 안타깝다는 정서가 함께 하고 있으니 왕소군을 형상화하고 있는 역대 시편의 보편적인 정조를 나누어 가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뒤에 적은 작품은 정두경이 노래한 왕소군으로, 보편적인 정조에서는 상당 정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이양연의 작품이 왕소군의 시선에 유념하여 쓰였다면, 정두경의 작품은 왕소군의 이력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이 피력되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되어야 한다. 정두경이 포착한 왕소군의 단심과 야속함은 이양연의 그것과 相似하다. 천자가 계실 궁궐의 뜰이 몇만리 떨어진 변방 너머에서는 보일 리 만무한데 그럼에도 시선을 빈번히 보낸다는 것은 漢나라 王室에 대한 충심이 한결같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양연이 그런 왕소군의 안타까움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모연수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異域에 내침을 당했다는 야속함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작품의 主旨는, 왕소군의 丹心과 야속함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작가의 論斷에 있다. 작가의 진단은 異域 멀리로 내침을 당하지 않고 漢室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황제의 恩遇를 받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과장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의자왕도 삼천궁녀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당연히 漢의 황제를 모신 궁녀의 규모는 상당할 수밖에 없겠다. 사정이 그러하니 왕소군이 황제의 눈에 띄어 사랑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정두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한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은성적이며 함축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시인의 의도가 직설적으로 토로되는 경우도 드물며, 토로된 의도를 적확하게 해석해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이 작품에서 정작 정두경이 말하고 싶었던 主旨는 무엇이였을까. 한나라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황제의 恩遇를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사정이 그러한테 흉노의 아

내 된 왕소군 당신은, 옆에서 당신을 흠모하는 單于에게는 냉담한 채 漢
 皇만을 부질없이 그리워하고 있다.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대처인지를 왕
 소군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상식적인 대응일 수 없으니 결국 정
 두경의 의중은, 당신이 아예 안중에도 없는 漢皇을 그리워하지 말고 당신
 을 향한 선우의 흠모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婦德으로
 당신의 욕망을 옥죄지 말라는 이야기이니, 탄력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
 다 하겠다.

우리의 독법으로 탄력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정두경의 해당 작품
 을, 그렇다면 당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이쉽게도 정두
 경의 작품에 대한 품평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두경의 작품과 相
 似한 정조를 제출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품평을 통해 그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바, 鵝溪 李山海⁹⁾의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삼천이나 되는 궁녀 궁전에 겹겹이 있으니,
 바로 지척에 있어도 지존빌 방도가 없네.
 아마도 그때에 이역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면,
 한궁에선 그 누가 소군 있었음을 알리오.
 (三千粉黛鎖金門, 咫尺無由拜至尊. 不是當年投異域, 漢宮誰識有昭君.)

세상사 은원은 분디 정치가 없는 것,
 오랑캐 땅이라고 반드시 이방인 것은 아닌데.
 무슨 까닭에 구중궁궐에서 조각달과 짝하며,
 임금 한 번 못 볼 때와 같이 지내려고.

9) 아계는 정두경보다 두 세대 정도를 앞서 산 인물인데, 동일한 제재를 두고 서로 흡사
 한 정조와 의론을 제출하고 있는 바, 두 작품 사이에 있었을지 모를 영향의 수수관계
 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世間恩愛元無定, 未必氈城是異鄉. 何似深宮伴孤月, 一生難得近君王.)¹⁰⁾

일견하는 것으로 정두경의 작품이 분량에서나 정조에서나 아계가 지은 <왕소군>의 축약이자 집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계의 <왕소군>에서는 이역으로 내침을 당했으니 왕소군의 존재가 드러났지 그렇지 않았다면 익명의 궁녀로 살다 스러졌으리라 단언하며 한편으로 오랑캐 땅이라 하여 선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왕소군을 안쓰럽게 여기는 바, 정두경의 작품에는 이 두 항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계의 작품을 홍만중은 『소화시평』에 실고, ‘아계의 사의는 너 무 쉽게 드러난다. 그러니 말이 마음의 소리를 적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李詩辭意太露, 信乎. 言志心之聲也.)’는 품평을 곁들이고 있다.¹¹⁾ 신랄하기 이를 데 없는 비판이라 아니할 수 없겠는데 홍만중은 이와 같은 원색적인 비판으로도 분을 삭히지 못했는지, 아계의 작품은 송대 왕안석의 작품을 竊取한 것이라고 하며 왕안석의 작품에 대한 중국 문인의 혹평을 첨부하고 있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아계의 작품이, 따라서 동시에 정두경의 작품도 혹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송대의 저명한 詩評者인) 羅大經은 ‘마음을 서로 알아주지 않는다면 신하가 임금을 배반할 수 있고 부인이 남편을 저버릴 수 있던 말인가(心不相知, 臣可以叛其君, 妻可以棄其夫乎.)’라 하였고 朱子도 ‘悖理傷道’하다고 罵倒하였다고 한다.¹²⁾

10) 이산해, <王昭君>, 『鵝溪遺藁』(한국문집총간 47권 527쪽).

11) 洪萬宗, 『小華詩評下』(조종업편, 한국시화총편 3권, 동서문화원, 1989, 371면 참조).

12) 洪萬宗, 위와 같은 곳.

흔히 군사부일체라고 운위되곤 하는데, 전통 사회에서도 그 셋이 동일한 함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듣고 있다. 부모의 경우, 골육지친으로 맺어진 관계이니 무한대로 효성을 드러야 하지만 君臣은 어디까지나 계약관계이므로 군주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만큼만 충성하면 된다는 입론도 없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얼굴도 모르는 이를 지아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우는 통념상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흥만종과 나대경의 입론은 전통 사회에서 상정 가능한 입론 중 보다 硬化된 좌표축에 위치하고 있을 것은 명백할 듯하다.

논의를 요약하도록 하자. 정두경의 작품은 고전 시평의 개입 없이 읽었을 때에는 탄력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전 시평에서는, 물론 정두경의 작품을 바로 두고 한 언급은 아니지만 그것과 相似한 정조를 제출한 작품을 두고, 동원가능한 최대치의 혹평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相距를 여하히 이해하여야 하는가.

기실 탄력적이란 평가는 가치 중립적이다. 대상 작품의 성격이나 특징을 정돈하면서도, 그 성취에 대한 판정 과정에는 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이에 반해 나대경이나 주자의 품평 방식은 완전히 가치 평가적이다. 성취에 대한 판정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읽는 독자들에게 전자가 안내인이라면 후자는 판관이다. 읽는 작품에 대해 안내인은 조언을 하는데 판관은 명령을 내린다.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점차 권력과 다른 목소리는 제 스스로 잦아들거나 추방된다. 전통 사회에서의 여성적 목소리는 도덕률 근본주의자라 할 권력에 의해 본연의 발랄함이 마모되어 갔던 것이다. 교조화의 폐해인 셈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4. 여성 욕망 정치의 인식론적 기저

앞 장에서 여성적 욕망은 승인받지 못하고 오히려 타매되는 정황을 살핀 바, 이 장에서는 전통 사회의 여하한 인식론적 기저가 이러한 불승인과 타매를 가능케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두 문장을 두고 불거진 분분했던 시비를 검토하며 그 전말을 탐색하기로 한다. 앞의 문장은 『禮記』 『內則』에, 뒷 문장은 『周禮』 『地官司徒』에 등장한다.

빙하면 처가 되고 분하면 첩이 된다(聘則爲妻, 奔則爲妾).

중춘의 계절에 남녀를 만나게 하였는데 이때에는 분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았다(仲春之月, 令會男女, 於是時也, 奔者不禁).

분분한 시비를 야기한 논점은 간명하기 짝이 없다. 두 문장에 공히 등장하는 ‘奔’의 의미가 무엇이나는 논란이 바로 그것. 음란하고 분방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단지 혼례 의식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의미인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핵심항인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전자가 ‘奔’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며, 논리의 비약과 왜곡 그리고 오독을 감수하며 한사코 후자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교조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奔’을 唾罵하는 ‘奔則爲妾’과 ‘奔’을 용인하는 ‘奔者不禁’의 엇섞임이 여하한지에 따라 특정 개인의, 특정 시대의 그리고 특정 공동체의 긴장 정도가 확인된다는 점이 이 장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이다. ‘奔’에 대한 오독들을 하나씩 점검하는데, 첫번째는 『芝峯類說』에 실린 글이다.

『禮記』에, ‘달아나면 쫓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해석하는 이가 말하기를, ‘명령을 듣고 급히 달려가느라고 六禮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달아났다고 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先王이 制禮에, ‘仲春에는 달아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때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奔과 淫奔의 뜻은 같지 않은 것이다(禮奔則爲妾, 釋之者以爲聞命而趨, 不待六禮, 故謂之奔, 先王制禮, 仲春奔者不禁, 恐失時也, 然則奔與淫奔之義不同矣).¹³⁾

유장원 역시 이수광과 유사한 논리를 펴고 있는 바, 명대의 학자 柯尙遷의 입론을 이끌어 와 ‘奔者不禁’이 사사로운 음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非私奔之謂) 강변하고 있는 바,¹⁴⁾ 세부적인 입론은 이수광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만큼 ‘奔’을 음란하고 분방하다는 뜻으로 읽기를 거부하는 층이 광범위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다. 이수광과 유장원의 논리를 반박하자면, 왕명을 받들어 황급히 달려가야겠기에 혼례의 세부적인 의식을 치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과가 비판받을 일이라면 그 비판은 신랑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그런데 왜 사태의 진전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던 신부가 첩이 되어야 하는가.

과문한 탓인지 혼례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었다는 어떤 문헌적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왜 한사코 仲春에 혼례를 올려야 하겠기에 절차를 소략히 하여, 처가 아니라 첩으로 살아갈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당사자인 신부나 친정은 말할 나위도 없겠고 신랑 역시 혼례 절차를 촉급히 진행하여 제 아내가 첩실이 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교조적인 사유로 무장한 이들에게는 경전 구절에서의 ‘奔’이 淫奔이 아니어야 했으므로, 저와 같은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고 혹은 논리적 허약을

13) 南晩星 譯, 『芝峯類說(上)』, 을유문화사, 1998, 231쪽.

14) 柳長源, <嫁娶時月>, 『常變通攷卷之六』 六張.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종교적 부면과 마찬가지로, 도 그마에 매몰될 경우 대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거리가 확보되기 힘들다는 사정이 재삼 확인되는 장면인 것으로도 읽힌다. 어떤 경우 에나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진리나 교의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아비가, 사또의 자제가 너를 받아들여 첩을 삼고자 하니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여식이, 비록 천하게 태어났지만 마음가짐은 천하지 않는데, 분즉위첩이라 들었는데 한번도 淫奔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첩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父曰, 使道子弟納汝爲妾, 豈不榮感乎? 女曰, 生則雖賤, 志則不賤, 嘗聞奔則爲妾, 未嘗淫奔, 何以妾爲?).¹⁵⁾

『양은천미』에 수록된 <金英娘用智嫁貴門>의 한 대목이다. 평안감사의 자제가, 위 인용 속의 여성을 한번 보고는 반하여서 뒤를 밟아가 여성의 아버지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여성의 아버지가 천민이라 첩실로 들어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바, 해당 대화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야담의 한 화소이니만큼 허구적 각색이 없을 수 없겠으나, 적어도 한번도 淫奔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남의 첩이 되어야 하느냐는 항변은 經書의 해당 구절을 올바르게 읽은 것이다. 진리의 凡庸함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민간의 천한 여성도 제대로 이해한 구절을 두고 당대의 거유들은 기상천외한 오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처첩 간의 신분적인 위계에 말미암은 간극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간극의 원인이 혼례를 올린 날짜의 흐트러짐 때문이기도 하다는 柯尙遷의 주석은¹⁶⁾ 실소를 자아낼 만큼 설득력이 부

15) <金英娘用智嫁貴門>(이신성·정명기 공역, 『양은천미』, 보고사, 2000, 26쪽.)

죽한 것으로 보인다. 조금더 나아간다면 당위를 혹은 규범을 보위하려는 이들의 분투는 이문열의 『황제를 위하여』에서의 ‘낯은’ 충신들의 그것과 겹쳐지기도 하는 듯하다. 교조화된 신념은 이토록 위협하며 동시에 희극적인 것이다.

또한 김원행은 분즉위첩에서의 분이 음분의 분이 아님을 논증하기 위해 논리적인 비약과 왜곡을 감행한다. 김원행의 주장은 ‘처(妻)에 대해서는 반드시 빙문(聘問)을 먼저 한 뒤에 장가들고 첩은 빙문의 예가 없이 곧바로 가는 것은 적첩(嫡妾)을 분명히 하고 존비(尊卑)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在妻則必以聘問先之然後娶之, 妾則無聘問之禮而直往, 所以明嫡妾別尊卑)¹⁷⁾라는 것이다.

처를 맞이할 경우 정중한 備禮가 있어야 하고 첩을 거느릴 경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김원행의 논지는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김원행의 주장에서 확보되는 설득력은 전통 사회의 관례나 습속에 의해 확보되는 설득력이자 해당 문맥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되는 설득력인 것은 결코 아니다.

살핀 바와 같이 교조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경전 속 구절에 대한 왜곡과 오독이 자행되는 정황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균형 감각을 갖춘 이들은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바, 아래 인용은 성해응의 입론이다.

중춘에 남녀를 모이게 하고 奔者도 금하지 않는다는 일에 이르면 아마도 先王之政이 아닌 것 같으니 알몸으로 따라가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王

16) 柯尙遷이 말했다. “奔이란 정해진 때보다 앞서 六禮를 다 갖추지 못함을 말한다. 이 때를 넘기면 때를 잃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成昏한 것으로 허락하는 것이다.(柯氏尙遷曰：“奔謂先時未具六禮，過此則失時也，故亦許其成昏。”柳長源，〈嫁娶時月〉，『常變通攷卷之六』六張.)

17) 金元行，〈答林厚而〉，『漢湖集卷之八』(한국문집총간 220권 159쪽).

政이 비록 鰥寡 구제를 급무로 여긴다 하더라도 이렇듯 절도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至若仲春令會男女, 奔者不禁, 恐非先王之政矣, 是不近於躒逐乎, 王政雖以恤鰥寡爲急, 不應若是之無節矣).¹⁸⁾

‘奔者不禁’을 혼례의 절목을 따르지 않아도 혼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방식은 선왕이 시행했을 정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식에 기초한 언명으로 금방 수궁할 수 있으니 달리 부연이 필요치 않겠다. ‘아마도(恐)’가 있어 조심스러운 반론으로 읽힐 수 있겠으나 躒逐과 無節을 보면 단호하기 짝이 없는 날선 비판인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에게는 『홍제전서』에서 확인되는 정조의 언명이 예기의 해당 구절에 대한 正見인 것으로 판단된다.

媒氏의 직에는 “中春의 달에 男女를 모이게 하는데, 그때는 제 마음대로 만나는 자도 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곧 鄭·衛의 음란한 풍속이다(至於媒氏中春之月, 令會男女, 奔者不禁, 則便一鄭衛之風俗).¹⁹⁾

소품문마저 엄격하게 통제했던 정조이니만큼 당연히 ‘奔’을 鄭衛의 풍속과 같이 음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어쨌든 ‘奔’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일그러뜨리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펼쳐온 논의를 요약하도록 한다. 『예기』에 실린 ‘奔者不禁’은 상식적인 층위에서는 당연히 ‘淫奔한 일도 금하지 않는다’라고 읽혀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放縱이 불편한 이들은, 무리수를 동원하며 한사코 다른 방식으로 읽으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일이 경과되며 교조화되는 사유의 경직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18)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冊一』(한국문집총간 278권 310쪽).

19) 정조, 『弘齋全書卷百八』(한국문집총간 265권 207쪽).

이상과 같이 ‘奔者不禁’을 두고 불거진 오독과 왜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사태는 ‘奔則爲妾’을 두고도 되풀이 되고 있으니 성호 이익의 언급을 통해 그 경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아래 인용은 『禮記』 「內則」의 ‘奔則爲妾’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無名子 尹愔의 질의에 대해 성호가 답변한 대목이다.

‘맞아들이면 처가 된다’ 하였으니, ‘따라감’은 ‘맞아들이는 예’를 기다리지 않고 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국가에 흉년이 들면 예를 갖추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周禮』에 ‘중춘의 달에 따라가는 이를 금하지 않았다.’라고 한 구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聘則爲妻, 則奔乃不待聘而往也, 古者國有凶荒, 則殺禮而多昏, 周禮中春之月, 奔者不禁, 亦可考.).²⁰⁾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聘則爲妻’와 ‘奔則爲妾’에 대한 성호의 입론은, 해당 구절에 대한 축자적인 이해에는 오독이 있지 않은데 축자적 이해에 바탕하여 맥락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에서 논지의 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奔’을 두고 ‘聘禮’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이해는 정확한 것이다. 통상적인 의례를 거치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사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논리의 비약이 불거지고 있는 바, 흉년이 들 경우 축박하게 혼례가 진행되는 경우는 비밀비재했을 것이다. 治亂이 갈마드는 세상사에서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인 셈이다. 문제는 ‘奔則爲妾’과 흉년기에 진행되는 축박한 혼사를 인과 관계로 묶는 데에서 불거진다. 거듭하는 이야기지만 세상 어느 누군들, 흉년기에 혼례를 치렀다 하여 첩으로 살아가는 것을 묵수하겠는가. 결론코 그럴 이치는 있을 수

20) 尹愔, <小學問目>, 『無名子集文稿冊七』(한국문집총간 256권 310쪽).

없으니 건강부회라 아니할 수 없겠는 바, 역시 적어도 이 대목에서 확인되는 성호의 사유는 교조적이고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 장에서의 논의를 정돈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淫奔하게 관계를 맺는 경우도 용인된다는, 淫奔하게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첩이 된다는 서로 대척적인 經書에서의 언명을 두고 그에 대해 불거진 시비를 살피며 그 의미를 검토해본 셈이다. 전자는 개아적인 욕망을 용인하고 있으며, 후자는 개아적인 욕망이 규범을 통해 통어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奔者不禁’의 경우 남녀간의 정감의 교유를 용인하는 탄력적인 사유나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경화된 사회에서는 한사코 해당 언명이 당위나 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強辯하고 있는 바,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강변의 정도가 심할수록 논지의 허약함이 노출될 뿐인 것으로 보인다. 교조적인 인식의 폐해가 역력히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한 셈이라 하겠다. ‘奔者不禁’과 ‘奔則爲妾’이 애당초 경서에서의 의미대로 전승되어 왔다면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도 앞 장에서 살핀 것과 같은 타매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경서의 주석자들은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듯이 자유롭고 열린 사유를 건디지 못하고 보더더 완고해지고 점점 더 경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한 동맥경화가 살핀 바와 같이 여성의 욕망에 대한 신랄한 매도로 결과지어진 바, 어디 여성의 문제에만 국한되었을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측면만을 평가한다면 동아시아의 중세는 영락없이 시종 우중충한 절기였던 것이다.²¹⁾

21)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긍정하지 않았기에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곡과 건강부회를 감내하면서까지 드러내는 그토록 강고한 교조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 마치며

이 글이 주목하려 한 대목은, 경전에 소재한 ‘奔者不禁’과 ‘奔則爲妾’에 대한 후대의 주석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이다. 본문에서 살폈듯 ‘奔’은 명백히 淫奔한 것으로 읽혀야 한다. 그럼에도 후대의 주석가들은 한사코, 사력을 다해 ‘奔’이 淫奔으로 읽혀서는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奔’의 의미를 혼례일이 정해졌는데 남편이 出仕하게 된 경우라 하기도 하고, 出戰하게 된 경우라 하기도 하며 혹은 흉년이 든 경우라 하기도 했다. 억지추향이자 건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남편이 출사했다 하여 혹은 출전했다 하여 첩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 층위에서 수긍될 수 있는 사태인 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의 감행은 여성들에게, 미리 마련된 閨範을 맹목적으로 묵수하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며 한편으로 閨範에서의 이탈에는 엄중한 타매가 가해진다는 경고에 다름 아닌 바 어느 사회이든지를 막론하고 유무형의 禁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당연히 금기의 위반을 징치하는 기제도 마련되기 마련이겠다. 그럼에도 살핀 바와 같이, 해당 사회의 지성들이 저러한 건강부회를 감행하는 경우는 달리 있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아시아의 중세가, 적어도 여성 문제에 국한하자면 교조적인 사회였다는 사실은 韃靼을 요치 않는 자명한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경전의 주석 과정에서 억지추향적인 왜곡을 통해 관철되고 있었다는 사례를 보고하며 교조성이 작동되는 또다른 회로를 확인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金元行, 『漢湖集』(한국문집총간 220권, 1~415쪽.)
成海應, 『研經齋全集 VI』(한국문집총간 278권, 1~503쪽.)
柳長源(정경주 外 공역), 『常變通攷 3』, 신지서원, 2009, 1~555쪽.
尹楮, 『無名子集』(한국문집총간 256권, 1~584쪽.)
이량연, 『동양고전연구』 제7집, 동양고전학회, 1996, 323~340쪽.
이산해, 『鵝溪遺稟』(한국문집총간 47권, 443~597쪽.)
이종은·정민 공편, 『한국역대시화유편』, 아세아문화사, 1988, 1~686쪽.
정두경, 『東溟集』(한국문집총간 100권, 391~508쪽.)
정조, 『弘齋全書 IV』(한국문집총간 265권, 1~591쪽.)
洪萬宗, 『小華詩評下』(조종업편, 한국시화총편 3권, 동서문화원, 1989, 1~727쪽.)
- 김달진 역해, 『한국한시』 3권, 민음사, 1989, 1~330쪽.
南晩星 譯, 『芝峯類說(上)』, 을유문화사, 1998, 1~652쪽.
南晩星 譯, 『芝峯類說(下)』, 을유문화사, 1998, 1~650쪽.
이신성·정명기 공역, 『양은천미』, 보고사, 2000, 1~325쪽.
이택동, 『조선조 여성 漢詩의 두 樣相』, 『성심어문논집』 제 20·21合併輯, 1999, 101~123쪽.
- 헨리 데이빗 소로우(강승영 옮김), 『월든』, 이레, 2004, 1~485쪽.

ABSTRACT

Expression and punishment of female desire in Korean chinese poetry

Lee, Taek-dong

The Chinese scriptures say: When you run away, you become a concubine. And there is the following saying. It is not forbidden to run away. The words should be interpreted as follows. If you act lascivious, you become a concubine. It is not prohibited to act lasciviously. The preceding sentence is a statement that requires women to keep their fidelity. The following sentence implies that women are allowed to deviate from their sexuality: the previous sentence contains content that represses women's sexual desires, and the latter contains content that permits women's sexual desire. Therefore, the preceding sentences contain content faithful to the medieval norms, and the latter ones contain content that deviates from the medieval norms.

Confucians interpreted the sentence differently. The date of the wedding has been already set. But if the emperor calls me, she would be a concubine. Sometimes the interpretation is as follows. The date of the wedding has been already set. But if I am called to the war, she would be as concubine. If a famine happens, she would be as concubine. All of the above interpretations are false. So why did the Confucians interpret it wrong? The Confucians tried not to approve women's sexual desires. These circumstances show a morally solemn society. This phenomenon of misinterpretation is to be explained by Confucian scholars's hope to maintain their society as a morally docile one. Women who lived in these societies had to suppress their sexual desire. The women who spurred sexual desire were morally condemned. Such a society can not be said to be a healthy one. On the other hand, in exceptional time and space, there were Confucian scholars who approved female sexual desires. But that number was not much. Therefore, the medieval society of East Asia, as

far as sexual desire of women was concerned, was bleak.

Key Words female desire, punishment, epistemological basis, 'obscurity', doctrinal thought

논문투고일 : 2017.10.15

심사완료일 : 2017.11.09

게재확정일 : 2017.11.15